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금천구
GEUMCHEON-GU

목 차

Ⅰ. 총괄 기금운용계획 ····· 3

Ⅰ-1. 기금개요 ····· 5

Ⅰ-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 6

Ⅰ-3. 기금조성규모 ····· 8

Ⅰ-4. 기금총조성규모 ····· 9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 ····· 10

Ⅱ.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23

Ⅱ-1. 자활기금 ····· 25

Ⅱ-2. 노인복지기금 ····· 41

Ⅱ-3. 양성평등기금 ····· 55

Ⅱ-4. 청년미래기금 ····· 69

Ⅱ-5. 재정안정화기금 ····· 83

Ⅱ-6. 재난관리기금 ····· 95

Ⅱ-7. 옥외광고발전기금 ····· 113

Ⅱ-8. 도로굴착복구기금 ····· 127

Ⅱ-9. 중소기업육성기금 ····· 139

Ⅱ-10. 남북교류협력기금 ····· 155

Ⅱ-11.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167

Ⅱ-1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183

Ⅱ-13. 식품진흥기금 ····· 195

Ⅰ. 총괄 기금운용 계획



1. 기금개요

회계년도 : 2020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가. 운용방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추진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으로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나. 기금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자활기금	2001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기금	1999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노인복지법 제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어르신장애인과	
양성평등기금	2004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성가족과	
청년미래기금	2019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동청년과	
재정안정화기금	2019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지방재정법 제1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기금	2005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10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설행정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999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도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5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19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지역경제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995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995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소행정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도모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위생과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회계년도 : 2020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1,984,899	4,996,915	21,000	0	3,797,503	0	11,884,792	0	248,569	1,036,120
자활기금	925,859	0	0	0	3,600	0	897,259	0	15,000	10,000
노인복지기금	351,760	0	0	0	0	0	345,382	0	6,378	0
양성평등기금	404,101	0	0	0	0	0	396,101	0	8,000	0
청년미래기금	1,000,000	500,000	0	0	0	0	500,00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3,738,000	3,738,000	0	0	0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4,421,835	708,915	0	0	0	0	3,651,972	0	60,948	0
옥외광고발전기금	1,257,343	0	0	0	0	0	1,098,343	0	19,000	140,000
도로굴착복구기금	2,167,082	0	0	0	0	0	1,303,832	0	31,250	83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6,059,707	0	0	0	3,735,337	0	2,244,360	0	80,010	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0	50,000	0	0	0	0	0	0	0	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64,985	0	0	0	20,200	0	442,285	0	2,500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10,364	0	0	0	0	0	183,364	0	6,000	21,000
식품진흥기금	933,863	0	21,000	0	38,366	0	821,894	0	19,483	33,120

회계년도 : 2020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 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21,984,899	1,861,890	5,114,000	0	0	0	15,009,009	0	0	0
자활기금	925,859	47,700	150,000	0	0	0	728,159	0	0	0
노인복지기금	351,760	7,360	0	0	0	0	344,400	0	0	0
양성평등기금	404,101	5,500	0	0	0	0	398,601	0	0	0
청년미래기금	1,000,000	0	0	0	0	0	1,000,000	0	0	0
재정안정화기금	3,738,000	0	0	0	0	0	3,738,000	0	0	0
재난관리기금	4,421,835	300,000	0	0	0	0	4,121,835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257,343	117,200	0	0	0	0	1,140,143	0	0	0
도로굴착복구기금	2,167,082	1,081,000	0	0	0	0	1,086,082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6,059,707	1,000	4,800,000	0	0	0	1,258,707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0	2,200	0	0	0	0	47,800	0	0	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64,985	420	14,000	0	0	0	450,565	0	0	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10,364	33,000	0	0	0	0	177,364	0	0	0
식품진흥기금	933,863	266,510	150,000	0	0	0	517,353	0	0	0

3. 기금조성규모

회계년도 : 2020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884,792	10,100,107	6,975,890	15,009,009	3,124,217
자활기금	897,259	28,600	197,700	728,159	△169,100
노인복지기금	345,382	6,378	7,360	344,400	△982
양성평등기금	396,101	8,000	5,500	398,601	2,500
청년미래기금	500,000	500,000	0	1,000,000	500,000
재정안정화기금	0	3,738,000	0	3,738,000	3,738,000
재난관리기금	3,651,972	769,863	300,000	4,121,835	469,863
옥외광고발전기금	1,098,343	159,000	117,200	1,140,143	41,800
도로굴착복구기금	1,303,832	863,250	1,081,000	1,086,082	△217,750
중소기업육성기금	2,244,360	3,815,347	4,801,000	1,258,707	△985,653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000	2,200	47,800	47,8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42,285	22,700	14,420	450,565	8,28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183,364	27,000	33,000	177,364	△6,000
식품진흥기금	821,894	111,969	416,510	517,353	△304,541

4. 기금 총 조성규모

회계년도 : 2020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15,009,009	13,015,353	0	28,024,362
자활기금	728,159	572,680	0	1,300,839
노인복지기금	344,400	90,000	0	434,400
양성평등기금	398,601	0	0	398,601
청년미래기금	1,000,000	0	0	1,000,000
재정안정화기금	3,738,000	0	0	3,738,000
재난관리기금	4,121,835	0	0	4,121,835
옥외광고발전기금	1,140,143	0	0	1,140,143
도로굴착복구기금	1,086,082	0	0	1,086,082
중소기업육성기금	1,258,707	12,118,563	0	13,377,270
남북교류협력기금	47,800	0	0	47,8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50,565	208,700	0	659,26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77,364	0	0	177,364
식품진흥기금	517,353	25,410	0	542,7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

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4.]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11.5.30.]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 삭제 <2015.12.10.>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제목개정 2015.12.10.]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본조신설 2015.12.10.]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본조신설 2015.12.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2.10.]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 삭제 <2010.2.8.>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8.]

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0.2.8.]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융자관리계정으로 관리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
2. 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재정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융자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2.8.]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운용수익 중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수익

[본조신설 2010.2.8.]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2.8.]

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2>부터 <388>까지 생략

Ⅱ.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



자활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

(3) 설치년도 : 2001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점포임대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 지원(교육비, 기능보강비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897,259	28,600	197,700	△169,100	728,15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728,159	572,680	0	1,300,839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 및 자활사업 수익금 등

(3) 지원기준 : 대여자금 이자 연1%,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2천만원 이내),자활기업 사업자금(1억원 이내)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2억원 이내) 등

(4) 지원대상 :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관 및 단체(자활사업기관, 자활기업 등)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925,859	1,101,551	△175,692	합 계	925,859	1,101,551	△175,692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7,700	21,000	26,7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50,000	250,000	△100,00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600	2,900	70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897,259	1,061,651	△164,392	예 치 금	728,159	830,551	△102,392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15,000	17,000	△2,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10,000	20,000	△10,00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8,600	39,900	△11,3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8,600	39,900	△11,300	
214 사업수입	10,000	20,000	△10,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0,000	20,000	△10,000	
				1)자활근로사업 수익 10,000,000원 = 10,000
216 이자수입	18,600	19,900	△1,3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0	17,000	△2,000	
				1)공공(정기)보통 예금 이자 15,000,000원 = 15,00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00	2,900	700	
				1)점포임대보증금 대여 이자 3,600,000원 = 3,6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7,259	1,061,651	△164,392	
710 보전수입등	897,259	1,061,651	△164,392	
714 예치금회수	897,259	1,061,651	△164,392	
714-01 예치금회수	897,259	1,061,651	△164,392	
				1)금고예치금 897,259,000원 = 897,259
수 입 합 계	925,859	1,101,551	△175,692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지원과	925,859	1,101,551	△175,692
기초생활보장	925,859	1,101,551	△175,69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197,700	271,000	△73,300
자활기금(자활기금)	197,700	271,000	△73,300
자활기금 운영(자체)	197,700	271,000	△73,300
201 일반운영비	700	1,000	△300
01 사무관리비 700	700	1,000	△300
1)기금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70,000원*5명*2회 700,000 = 700			
307 민간이전	47,000	20,000	27,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47,000	47,000	20,000	27,000
1)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역량 향상교육 등 15,000,000 = 15,000			
1)자활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등 2,000,000 = 2,000			
1)자활실시기관(사업단) 기능보강비 30,000,000 = 30,000			
501 융자금	150,000	250,000	△100,000
01 민간융자금 150,000	150,000	250,000	△100,000
1)민간융자금 100,000,000 = 100,000			
1)자활기업(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및 수급자 자활조성자금 50,000,000 = 50,000			
재무활동(복지지원과)	728,159	830,551	△102,392
보전지출(자활기금)	728,159	830,551	△102,392
자활기금 예치	728,159	830,551	△102,392
602 예치금	728,159	830,551	△102,392
01 예치금 728,159	728,159	830,551	△102,392
1)정기예금 700,000,000 = 700,000			
1)보통예금 28,159,000 = 28,159			
지 출 합 계	925,859	1,101,551	△175,692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907,118	400,000	0	0	51,589	0	234,802	220,727
2015년도	178,212	0	0	0	71,517	0	23,688	83,007
2016년도	193,387	0	0	0	61,875	0	18,392	113,120
2017년도	112,588	0	0	0	62,910	0	16,082	33,596
2018년도	267,054	0	0	0	62,850	0	17,852	186,352
2019년도	39,900	0	0	0	2,900	0	17,000	20,000
2020년도	28,600	0	0	0	3,600	0	15,000	10,000
계	1,726,859	400,000	0	0	317,241	0	342,816	666,802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220,000	0	220,000	0	0	0	0	687,118
2015년도	30,000	0	30,000	0	0	0	0	148,212
2016년도	180,000	20,000	160,000	0	0	0	0	13,387
2017년도	100,000	0	100,000	0	0	0	0	12,588
2018년도	0	0	0	0	0	0	0	267,054
2019년도	271,000	21,000	250,000	0	0	0	0	△231,100
2020년도	197,700	47,700	150,000	0	0	0	0	△169,100
계	998,700	88,700	910,000	0	0	0	0	728,15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자활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128,359	897,259	728,159	△169,100	
예치금	소계	1,128,359	897,259	728,159	△169,100	
	우리은행	1,128,359	897,259	728,159	△169,1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제정 [2001.12.24 조례 제343호]
개정 [2005.05.09 조례 제429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2013.12.31 조례 제 769호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978호
(일부개정) 2018.11.09 조례 제9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 · 개발 · 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 기관 · 단체

제5조(지원신청 ·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 ·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 · 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 ·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주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 지방재정법 ·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12.31 규칙 제 450호
(일부개정) 2016.01.05 규칙 제489호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②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자금 대여 등 신청용, 별지 제2-2호 서식 :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용)
2.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 비용 지원신청 시는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급자 채용기업이 사업자금 대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기금 신청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제1항의 기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은 기금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1. 자활을 위한 생업(창업) 자금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당한 경우의 생계자금
3.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

②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로 하고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는 기업 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중복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⑤기금의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자금의 대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하할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7조제5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5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
2. 기금 대여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

부칙<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복지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3) 설치년도 : 199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노인복지증진 및 기금운용의 내실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위문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345,382	6,378	7,360	△982	344,4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344,400	90,000	0	434,400

(2) 재원조성 : 전입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

(3) 지원기준 :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51,760	348,579	3,181	합 계	351,760	348,579	3,181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7,360	7,36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345,382	342,201	3,181	예 치 금	344,400	341,219	3,181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6,378	6,378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378	6,378	0	
210 경상적세외수입	6,378	6,378	0	
216 이자수입	6,378	6,378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378	6,378	0	
				1)예치금 이자 6,378,000원 = 6,37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5,382	342,201	3,181	
710 보전수입등	345,382	342,201	3,181	
714 예치금회수	345,382	342,201	3,181	
714-01 예치금회수	345,382	342,201	3,181	
				1)예치금 회수 345,382,000원 = 345,382
수 입 합 계	351,760	348,579	3,181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어르신장애인과	351,760	348,579	3,181
노인·청소년	351,760	348,579	3,181
노인복지증진	7,360	7,360	0
노인복지기금 운영(노인복지기금)	7,360	7,360	0
노인복지기금 운영	7,360	7,360	0
201 일반운영비	280	280	0
01 사무관리비 280	280	280	0
1)운영수당 280			
2)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4명*1회 = 280			
301 일반보전금	7,080	7,08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580	2,580	2,580	0
1)노인복지시설 위문금(혜명양로원,섭리의집) 10,000원*86명*3회 = 2,580			
09 행사실비지원금 4,500	4,500	4,500	0
1)서울시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0,000원*1회 = 2,500			
1)탁구 및 당구대회 참가지원 2,000,000원*1회 = 2,000			
재무활동(어르신장애인과)	344,400	341,219	3,181
보전지출(노인복지기금)	344,400	341,219	3,181
노인복지기금 예치	344,400	341,219	3,181
602 예치금	344,400	341,219	3,181
01 예치금 344,400	344,400	341,219	3,181
1)금고 예치금 344,400,000원 = 344,400			
지 출 합 계	351,760	348,579	3,181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844,121	609,995	0	0	0	0	221,441	12,685
2015년도	4,035	0	0	0	0	0	4,035	0
2016년도	86,183	0	0	0	0	0	6,183	80,000
2017년도	10,363	0	0	0	0	0	10,363	0
2018년도	6,387	0	0	0	0	0	6,387	0
2019년도	6,378	0	0	0	0	0	6,378	0
2020년도	6,378	0	0	0	0	0	6,378	0
계	963,845	609,995	0	0	0	0	261,165	92,685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588,121	588,121	0	0	0	0	0	256,000
2015년도	4,218	4,218	0	0	0	0	0	△183
2016년도	3,825	3,825	0	0	0	0	0	82,358
2017년도	3,898	3,898	0	0	0	0	0	6,465
2018년도	4,663	4,663	0	0	0	0	0	1,724
2019년도	7,360	7,360	0	0	0	0	0	△982
2020년도	7,360	7,360	0	0	0	0	0	△982
계	619,445	619,445	0	0	0	0	0	344,4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노인복지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346,364	345,382	344,400	△982	
예치금	소계	346,364	345,382	344,400	△982	
	우리은행	346,364	345,382	344,400	△98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문화국 어르신장애인과)
제정 [1999.02.25 조례 제209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 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07.18 조례 제8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7.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7.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7.18>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3.18, 2016.07.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
2.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시설장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3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8]

제7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6.7.18>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8>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12.29,2011.3.18, 2016.7.18>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6.12.29, 2016.7.18>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8]

제12조(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67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성평등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 설치목적 :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3) 설치년도 : 2004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 지원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여성정책사업 공모를 통하여 채택된 여성관련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396,101	8,000	5,500	2,500	398,60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398,601	0	0	398,601

(2) 재원조성 :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공모신청서 접수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4) 지원대상 : 금천구양성평등기본조례제4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04,101	401,306	2,795	합 계	404,101	401,306	2,795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5,500	5,400	1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396,101	394,206	1,895	예 치 금	398,601	395,906	2,695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8,000	7,100	9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000	7,100	900	
210 경상적세외수입	8,000	7,100	900	
216 이자수입	8,000	7,100	9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7,100	900	
				1)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000원 = 8,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6,101	394,206	1,895	
710 보전수입등	396,101	394,206	1,895	
714 예치금회수	396,101	394,206	1,895	
714-01 예치금회수	396,101	394,206	1,895	
				1)예치금 회수 396,101,000원 = 396,101
수 입 합 계	404,101	401,306	2,795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여성가족과	404,101	401,306	2,795
보육·가족및여성	404,101	401,306	2,795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	5,500	5,400	100
양성평등기금(양성평등기금)	5,500	5,400	100
양성평등기금 운영(성인지)	5,500	5,400	100
201 일반운영비	500	400	100
01 사무관리비 500	500	400	100
1)운영수당 500			
2) 심의위원회 수당 100,000원*5명 = 500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	5,000	5,000	0
1)공모사업비 5,000,000원 = 5,000			
재무활동(여성가족과)	398,601	395,906	2,695
보전지출(양성평등기금)	398,601	395,906	2,695
양성평등기금 예치	398,601	395,906	2,695
602 예치금	398,601	395,906	2,695
01 예치금 398,601	398,601	395,906	2,695
1)예치금 398,601,000원 = 398,601			
지 출 합 계	404,101	401,306	2,79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507,264	390,000	0	0	0	0	117,264	0
2015년도	10,319	0	0	0	0	0	10,319	0
2016년도	8,204	0	0	0	0	0	8,204	0
2017년도	7,000	0	0	0	0	0	7,000	0
2018년도	7,273	0	0	0	0	0	7,273	0
2019년도	6,932	0	0	0	0	0	6,932	0
2020년도	8,000	0	0	0	0	0	8,000	0
계	554,992	390,000	0	0	0	0	164,992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120,461	119,811	0	650	0	0	0	386,803
2015년도	10,200	10,200	0	0	0	0	0	119
2016년도	5,300	5,300	0	0	0	0	0	2,904
2017년도	4,300	4,300	0	0	0	0	0	2,700
2018년도	5,280	5,280	0	0	0	0	0	1,993
2019년도	5,350	5,350	0	0	0	0	0	1,582
2020년도	5,500	5,500	0	0	0	0	0	2,500
계	156,391	155,741	0	650	0	0	0	398,60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양성평등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394,745	396,101	398,601	2,500	
예치금	소계	394,745	396,101	398,601	2,500	
	우리은행	394,745	396,101	398,601	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2004.09.13 조례 제408호]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0.05 조례 제 510호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문개정) 2013.09.27 조례 제755호
(전부개정) 2016.10.14 조례 제875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0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금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

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 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16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여성상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 또는 학대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상담창구를 구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시설 또는 단체에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의2(여성의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1조(유공자 표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875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65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년미래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

(3)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청년미래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500,000	500,000	0	500,000	1,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00,000	0	0	1,000,000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3) 지원기준 :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4) 지원대상 : 금천구 거주 및 활동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청년단체, 청년시설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00,000	0	1,000,000	합 계	1,000,000	0	1,000,000
전 입 금	500,000	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500,000	0	500,000	예 치 금	1,000,000	0	1,000,000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0	0	1,000,000	
710 보전수입등	500,000	0	500,000	
714 예치금회수	500,000	0	500,000	
714-01 예치금회수	500,000	0	500,000	
				1)예치금 회수 500,000,000원 = 500,000
720 내부거래	500,000	0	500,000	
721 전입금	500,000	0	50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0	0	500,000	
				1)일반회계 전입금 500,000,000원 = 500,000
수 입 합 계	1,000,000	0	1,000,00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아동청년과	1,000,000	0	1,000,000
노인·청소년	1,000,000	0	1,000,000
재무활동(아동청년과)	1,000,000	0	1,000,000
보전지출(청년미래기금)	1,000,000	0	1,000,000
청년미래기금 예치	1,000,000	0	1,000,000
602 예치금	1,000,000	0	1,000,000
01 예치금 1,000,000	1,000,000	0	1,000,000
1)금고 예치금 1,000,000,000원 = 1,000,000			
지 출 합 계	1,000,000	0	1,000,0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2019년도	500,000	500,000	0	0	0	0	0	0
2020년도	500,000	500,000	0	0	0	0	0	0
계	1,000,000	1,000,000	0	0	0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500,000
2020년도	0	0	0	0	0	0	0	500,000
계	0	0	0	0	0	0	0	1,000,0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청년미래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0	500,000	1,000,000	500,000	
예치금	소계	0	500,000	1,000,000	500,000	
	우리은행	0	500,000	1,000,000	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19.07.19 조례 제10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

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담당과장, 기금총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제14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한다.

제15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1042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안정화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3)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적립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치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0	3,738,000	0	3,738,000	3,738,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3,738,000	0	0	3,738,000

(2) 재원조성 :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 구" 라 한다)의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지원대상 : 일반화계로 전출하여 사용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3,738,000	0	3,738,000	합 계	3,738,000	0	3,738,000
전 입 금	3,738,000	0	3,738,00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0	0	0	예 치 금	3,738,000	0	3,738,000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38,000	0	3,738,000	
720 내부거래	3,738,000	0	3,738,000	
721 전입금	3,738,000	0	3,738,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3,738,000	0	3,738,000	
				1)일반회계 전입금 3,738,000,000원 = 3,738,000
수 입 합 계	3,738,000	0	3,738,00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기획예산과	3,738,000	0	3,738,000
일반행정	3,738,000	0	3,738,000
재무활동(기획예산과)	3,738,000	0	3,738,000
보전지출(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기금)	3,738,000	0	3,738,000
재정안정화기금 예치	3,738,000	0	3,738,000
602 예치금	3,738,000	0	3,738,000
01 예치금 3,738,000	3,738,000	0	3,738,000
1)금고 예치금 3,738,000,000원 = 3,738,000			
지 출 합 계	3,738,000	0	3,738,0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2020년도	3,738,000	3,738,000	0	0	0	0	0	0
계	3,738,000	3,738,000	0	0	0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2020년도	0	0	0	0	0	0	0	3,738,000
계	0	0	0	0	0	0	0	3,738,0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정안정화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0	0	3,738,000	3,738,000	
예치금	소계	0	0	3,738,000	3,738,000	
	우리은행	0	0	3,738,000	3,73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9.10.10 조례 제10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변경)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정안정화기금 담당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1049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관리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

(3) 설치년도 : 200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사후관리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안양천 침수정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3,651,972	769,863	300,000	469,863	4,121,835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4,121,835	0	0	4,121,835

(2) 재원조성 : 구세 전입금, 이자수입 등

(구세 전입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지원기준 : ○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3조(기금의용도)
○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4조(기금의운용관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4) 지원대상 : ○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재난 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421,835	3,947,555	474,280	합 계	4,421,835	3,947,555	474,280
전 입 금	708,915	671,872	37,043	비융자성사업비	300,000	300,00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3,651,972	3,207,236	444,736	예 치 금	4,121,835	3,647,555	474,280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60,948	68,447	△7,499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0,948	68,447	△7,499	
210 경상적세외수입	60,948	68,447	△7,499	
216 이자수입	60,948	68,447	△7,499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948	68,447	△7,499	
				1)예치금 이자 60,948,000원 = 60,94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60,887	3,879,108	481,779	
710 보전수입등	3,651,972	3,207,236	444,736	
714 예치금회수	3,651,972	3,207,236	444,736	
714-01 예치금회수	3,651,972	3,207,236	444,736	
				1)예치금 회수 3,651,972,000원 = 3,651,972
720 내부거래	708,915	671,872	37,043	
721 전입금	708,915	671,872	37,043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8,915	671,872	37,043	
				1)일반회계 전입금 708,915,000원 = 708,915
수 입 합 계	4,421,835	3,947,555	474,28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안전도시과	4,421,835	3,947,555	474,280
재난방재·민방위	4,421,835	3,947,555	474,280
재난및안전관리	300,000	300,000	0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300,000	300,000	0
재난관리기금 운영	300,000	3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0
01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0
1)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50,000,000원 = 150,000			
1)안양천 침수정비 150,000,000원 = 150,000			
재무활동(안전도시과)	4,121,835	3,647,555	474,280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4,121,835	3,647,555	474,280
재난관리기금 예치	4,121,835	3,647,555	474,280
602 예치금	4,121,835	3,647,555	474,280
01 예치금 4,121,835	4,121,835	3,647,555	474,280
1)금고 예치금 4,121,835,000원 = 4,121,835			
지 출 합 계	4,421,835	3,947,555	474,28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4,495,381	3,659,612	87,680	0	0	0	748,089	0
2015년도	585,109	559,735	0	0	0	0	25,374	0
2016년도	632,368	578,560	0	0	0	0	53,808	0
2017년도	672,563	609,064	0	0	0	0	63,499	0
2018년도	699,286	637,514	0	0	0	0	61,772	0
2019년도	740,319	671,872	0	0	0	0	68,447	0
2020년도	769,863	708,915	0	0	0	0	60,948	0
계	8,594,889	7,425,272	87,680	0	0	0	1,081,937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2,706,859	2,706,859	0	0	0	0	0	1,788,522
2015년도	150,000	150,000	0	0	0	0	0	435,109
2016년도	150,000	150,000	0	0	0	0	0	482,368
2017년도	385,493	385,493	0	0	0	0	0	287,070
2018년도	461,262	461,262	0	0	0	0	0	238,024
2019년도	319,440	319,440	0	0	0	0	0	420,879
2020년도	300,000	300,000	0	0	0	0	0	469,863
계	4,473,054	4,473,054	0	0	0	0	0	4,121,835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3,231,094	3,651,972	4,121,835	469,863	
예치금	소계	3,231,094	3,651,972	4,121,835	469,863	
	우리은행	3,231,094	3,651,972	4,121,835	469,8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정 [2005.04.11 조례 제424호]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2.28 조례 제 490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8.12 조례 제 67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 688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725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75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5.18 조례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02.27 조례 제971호
(일부개정) 2019.05.09 조례 제10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 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1.12.29, 2018.2.27>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31>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2.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8.2.27>

④ 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2.28, 201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9.5.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02.28, 2011.12.29>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개정 2005.05.24, 2006.12.29, 2007.02.28, 2007.12.28, 2011.03.18, 2011.08.12,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8.2.27, 2019.5.9.>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05.24, 2007.02.28, 2011.12.29, 2019.5.9.>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9.]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9.]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5.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2.28>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2.28>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9>

② 삭제 <2019.5.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5.9.>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5.9.]

제8조의3(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9.]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9.]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2.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5.05.24, 2007.0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 ·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025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11.03 규칙 제305호]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32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9.28 규칙 제 39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10.31 규칙 제 44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6.02 규칙 제 4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1.05 규칙 제489호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관은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심의 등) ①다음 각호의 자(이하 "기금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재난발생 등으로 조례 제6조제1항에 대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풍수해관련-치수과장 <개정 2006.12.29, 2013.10.31, 2015.6.2.>
2. 설해관련-도로과장<개정 2010.09.28>
3. 지진관련-도시안전과장 <개정 2006.12.29, 2013.10.31, 2015.6.2.>
4. 기타재난-관련부서 담당과장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별지 제3호서식) 비치하고 간사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④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여부 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구금고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하며 이주지원비는 실비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1. 융자한도 : 총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 신청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이율 : 연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융자가구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와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9호서식)
2. 영수증(구금고 일정서식)

③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정산 등) ①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기금 지출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당해년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설치년도 : 201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불법 옥외광고물등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한 광고물 수준향상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금적립 및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광고물 정비.개선사업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098,343	159,000	117,200	41,800	1,140,14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140,143	0	0	1,140,143

(2)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등

(3) 지원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준

(4)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257,343	1,185,000	72,343	합 계	1,257,343	1,185,000	72,343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17,200	118,700	△1,5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1,098,343	985,000	113,343	예 치 금	1,140,143	1,066,300	73,843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19,000	20,000	△1,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140,000	180,000	△40,00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59,000	200,000	△41,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69,000	70,000	△1,000	
213 수수료수입	50,000	50,000	0	
213-01 증지수입	50,000	50,000	0	
				1)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50,000,000원 = 50,000
216 이자수입	19,000	20,000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0	20,000	△1,000	
				1)예금이자수입 19,000,000원 = 19,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90,000	130,000	△40,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90,000	130,000	△40,000	
223-02 이행강제금	30,000	0	30,000	
				1)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30,000,000원 = 30,000
223-05 과태료	60,000	100,000	△40,000	
				1)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과태료 60,000,000원 = 6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8,343	985,000	113,343	
710 보전수입등	1,098,343	985,000	113,343	
714 예치금회수	1,098,343	985,000	113,343	
714-01 예치금회수	1,098,343	985,000	113,343	
				1)예치금 회수 1,098,343,000원 = 1,098,343
수 입 합 계	1,257,343	1,185,000	72,343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건설행정과	1,257,343	1,185,000	72,343
지역및도시	1,257,343	1,185,000	72,343
디자인이 숨쉬는 쾌적한 거리만들기	117,200	118,700	△1,500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117,200	118,700	△1,500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117,200	118,700	△1,500
201 일반운영비	50,700	45,700	5,000
01 사무관리비 50,700	50,700	45,700	5,000
1)운영수당 700			
2)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5명*2회 = 700			
1)일반수용비 50,000			
2)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구매설치 50,000,000원 = 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66,500	73,000	△6,500
01 시설비 66,500	66,500	73,000	△6,500
1)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1,650,000원*10개 = 16,500			
1)현수막 지정게시대 반자동화 10,000,000원*5개 = 50,000			
재무활동(건설행정과)	1,140,143	1,066,300	73,843
기금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1,140,143	1,066,300	73,843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	1,140,143	1,066,300	73,843
602 예치금	1,140,143	1,066,300	73,843
01 예치금 1,140,143	1,140,143	1,066,300	73,843
1)금고예치금 1,140,143,000원 = 1,140,143			
지 출 합 계	1,257,343	1,185,000	72,343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558,461	0	0	0	0	0	0	558,461
2015년도	442,336	0	0	0	0	0	15,722	426,614
2016년도	364,129	0	200,000	0	0	0	20,533	143,596
2017년도	171,821	0	0	0	0	0	24,756	147,065
2018년도	205,459	0	0	0	0	0	16,316	189,143
2019년도	200,000	0	0	0	0	0	20,000	180,000
2020년도	159,000	0	0	0	0	0	19,000	140,000
계	2,101,206	0	200,000	0	0	0	116,327	1,784,879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558,461
2015년도	293,370	293,370	0	0	0	0	0	148,966
2016년도	9,998	9,998	0	0	0	0	0	354,131
2017년도	353,605	353,605	0	0	0	0	0	△181,784
2018년도	68,190	68,190	0	0	0	0	0	137,269
2019년도	118,700	118,700	0	0	0	0	0	81,300
2020년도	117,200	117,200	0	0	0	0	0	41,800
계	961,063	961,063	0	0	0	0	0	1,140,143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017,043	1,098,343	1,140,143	41,800	
예치금	소계	1,017,043	1,098,343	1,140,143	41,800	
	우리은행	1,017,043	1,098,343	1,140,143	41,8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10.04.07 조례 제 613호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08.09 조례 제74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 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9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9.>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17.12.29.>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개정 2017.12.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7.12.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2.29.>]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9.>]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17.12.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03.18, 2013.8.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옥외광고 또는 기금 운용관련 부서의 장<개정 2011.03.18, 2014.11.14.>
2. 위촉직 :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8.9>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7.12.29.>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개정 2017.12.29.>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나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1.03.18>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주사<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4조(관련 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95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도로굴착복구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2) 설치목적 :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

(3) 설치년도 : 199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도모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굴착복구(도로포장) 및 굴착으로 손상된 도로정비 - 1,000백만원

불량맨홀 정비 - 70백만원

굴착복구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및 심의회 운영비 - 2백만원

굴착복구 업무수행 순찰차량 임차비 - 9백만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303,832	863,250	1,081,000	△217,750	1,086,08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86,082	0	0	1,086,082

(2) 재원조성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등

(3) 지원기준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3조

(4) 지원대상 :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작은 굴착으로 손상된 도로 정비

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167,082	2,100,367	66,715	합 계	2,167,082	2,100,367	66,715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081,000	1,061,600	19,4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1,303,832	1,450,367	△146,535	예 치 금	1,086,082	1,038,767	47,315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31,250	26,830	4,42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832,000	623,170	208,83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863,250	650,000	213,250	
210 경상적세외수입	31,250	26,830	4,420	
216 이자수입	31,250	26,830	4,42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1,250	26,830	4,420	
				1)예치금 이자 31,250,000원 = 31,250
220 임시적세외수입	832,000	623,170	208,830	
222 부담금	832,000	623,170	208,830	
222-02 일반부담금	832,000	623,170	208,830	
				1)원인자부담금 800,000,000원 = 800,000 1)불량맨홀 정비 원인자부담금 32,000,000원 = 32,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3,832	1,450,367	△146,535	
710 보전수입등	1,303,832	1,450,367	△146,535	
714 예치금회수	1,303,832	1,450,367	△146,535	
714-01 예치금회수	1,303,832	1,450,367	△146,535	
				1)예치금 회수 1,303,832,000원 = 1,303,832
수 입 합 계	2,167,082	2,100,367	66,715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도로과	2,167,082	2,100,367	66,715
도로	2,167,082	2,100,367	66,715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 개선	1,081,000	1,061,600	19,400
도로굴착복구기금(도로굴착복구기금)	1,081,000	1,061,600	19,400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	1,081,000	1,061,600	19,400
201 일반운영비	11,000	11,600	△600
01 사무관리비 10,400	10,400	10,400	0
1)일반운영비 10,400			
2)심의회 운영비 및 물품구입 1,300,000원 = 1,300			
2)도로관리심의회 위원수당 70,000원*5명*2회 = 700			
2)굴착복구 순찰차량 임차비 700,000원*12월 = 8,400			
02 공공운영비 600	600	1,200	△600
1)차량선박비 600			
2)굴착복구 순찰차량 유지비 50,000원*12월 = 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70,000	1,050,000	20,000
01 시설비 1,070,000	1,070,000	1,050,000	20,000
1)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1,000,000,000원 = 1,000,000			
1)불량맨홀 정비 70,000,000원 = 70,000			
재무활동(도로과)	1,086,082	1,038,767	47,315
보전지출(도로굴착복구기금)	1,086,082	1,038,767	47,315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	1,086,082	1,038,767	47,315
602 예치금	1,086,082	1,038,767	47,315
01 예치금 1,086,082	1,086,082	1,038,767	47,315
1)금고예치금 1,086,082,000원 = 1,086,082			
지 출 합 계	2,167,082	2,100,367	66,71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16,811,220	0	0	0	0	0	765,131	16,046,089
2015년도	570,570	0	0	0	0	0	41,924	528,646
2016년도	608,437	0	0	0	0	0	44,083	564,354
2017년도	1,549,774	0	0	0	0	0	41,135	1,508,639
2018년도	944,959	0	0	0	0	0	49,976	894,983
2019년도	958,910	0	0	0	0	0	37,020	921,890
2020년도	863,250	0	0	0	0	0	31,250	832,000
계	22,307,120	0	0	0	0	0	1,010,519	21,296,601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15,241,920	15,235,585	0	6,335	0	0	0	1,569,300
2015년도	750,431	750,431	0	0	0	0	0	△179,861
2016년도	586,641	586,641	0	0	0	0	0	21,796
2017년도	998,930	998,930	0	0	0	0	0	550,844
2018년도	1,300,516	1,300,516	0	0	0	0	0	△355,557
2019년도	1,261,600	1,261,600	0	0	0	0	0	△302,690
2020년도	1,081,000	1,081,000	0	0	0	0	0	△217,750
계	21,221,038	21,214,703	0	6,335	0	0	0	1,086,082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도로굴착복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606,521	1,303,832	1,086,082	△217,750	
예치금	소계	1,606,521	1,303,832	1,086,082	△217,750	
	우리은행	1,606,521	1,303,832	1,086,082	△217,750	(기금 금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정 [1999.04.30 조례 제217호]
개정 [2001.11.30 조례 제340호]
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05.24 조례 제 4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75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 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5.18 조례 제 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07.18 조례 제8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7.18>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개정 2016.7.1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 연구 ·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8>

② 삭제 <2016.7.18.>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개정 2016.7.18>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6.7.18>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18>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6.7.1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1.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관련된 공무원(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담과장,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과장, 하수도업무 담당과장)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6.7.1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8.>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6.7.1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복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1.11.30, 2016.7.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7.18.>]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7.18.>

제8조의2(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8>

제10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71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설치목적 :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설치년도 : 199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융자대상자 선정에 내실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244,360	3,815,347	4,801,000	△985,653	1,258,707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258,707	12,118,563	0	13,377,270

(2) 재원조성 :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정기 상환금 및 이자(연2회- 3월,9월) 등으로 조성

(3) 지원기준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한도액 2억원 이내, 기업운전자금

(4) 지원대상 :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6,059,707	5,807,605	252,102	합 계	6,059,707	5,807,605	252,102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1,000	120,700	△119,7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4,800,000	4,000,000	800,00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735,337	3,281,978	453,359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2,244,360	2,445,272	△200,912	예 치 금	1,258,707	1,686,905	△428,198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80,010	80,355	△345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65,347	162,078	3,269	
210 경상적세외수입	165,347	162,078	3,269	
216 이자수입	165,347	162,078	3,269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0,010	80,355	△345	
				1)예치금 이자 80,010,000원 = 80,010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5,337	81,723	3,614	
				1)융자금회수 이자 85,337,000원 = 85,33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894,360	5,645,527	248,833	
710 보전수입등	5,894,360	5,645,527	248,833	
713 융자금원금수입	3,650,000	3,200,255	449,745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650,000	3,200,255	449,745	
				1)융자금 회수 3,650,000,000원 = 3,650,000
714 예치금회수	2,244,360	2,445,272	△200,912	
714-01 예치금회수	2,244,360	2,445,272	△200,912	
				1)예치금 회수 2,244,360,000원 = 2,244,360
수 입 합 계	6,059,707	5,807,605	252,102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역경제과	6,059,707	5,807,605	252,102
산업금융지원	1,258,707	1,686,905	△428,198
재무활동(지역경제과)	1,258,707	1,686,905	△428,198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1,258,707	1,686,905	△428,198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	1,258,707	1,686,905	△428,198
602 예치금	1,258,707	1,686,905	△428,198
01 예치금 1,258,707	1,258,707	1,686,905	△428,198
1)금고 예치금 1,258,707,000 = 1,258,707			
산업진흥·고도화	4,801,000	4,120,700	680,300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4,801,000	4,120,700	680,300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4,801,000	4,120,700	680,30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성인지)	4,801,000	4,120,700	680,300
201 일반운영비	1,000	700	300
01 사무관리비 1,000	1,000	700	300
1)운영수당 1,000			
2)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5명*2회 = 1,000			
501 융자금	4,800,000	4,000,000	800,000
01 민간융자금 4,800,000	4,800,000	4,000,000	800,000
1)융자금 100,000,000원*48개소 = 4,800,000			
지 출 합 계	6,059,707	5,807,605	252,102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63,867,751	4,945,605	0	0	54,654,775	0	4,267,371	0
2015년도	3,802,962	0	0	0	3,715,508	0	87,454	0
2016년도	2,971,062	0	0	0	2,871,059	0	100,003	0
2017년도	2,819,105	0	0	0	2,745,046	0	74,059	0
2018년도	3,604,650	0	0	0	3,558,110	0	46,540	0
2019년도	4,362,333	1,000,000	0	0	3,281,978	0	80,355	0
2020년도	3,815,347	0	0	0	3,735,337	0	80,010	0
계	85,243,210	5,945,605	0	0	74,561,813	0	4,735,792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59,906,128	591,288	58,314,000	840	0	0	1,000,000	3,961,623
2015년도	2,445,854	55,854	2,390,000	0	0	0	0	1,357,108
2016년도	3,905,252	65,252	3,840,000	0	0	0	0	△934,190
2017년도	3,785,289	60,289	3,725,000	0	0	0	0	△966,184
2018년도	4,220,280	60,280	4,160,000	0	0	0	0	△615,630
2019년도	4,920,700	120,700	4,800,000	0	0	0	0	△558,367
2020년도	4,801,000	1,000	4,800,000	0	0	0	0	△985,653
계	83,984,503	954,663	82,029,000	840	0	0	1,000,000	1,258,707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961,857	2,244,360	1,258,707	△985,653	
예치금	소계	2,961,857	2,244,360	1,258,707	△985,653	
	우리은행	2,961,857	2,244,360	1,258,707	△985,65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64호]
전문개정 [1999.01.12 조례 제206호]
개정 [1999.06.26 조례 제220호]
개정 [2001.06.30 조례 제319호]
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22 조례 제 545호
(일부개정) 2011.10.27 조례 제 680호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 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 806호
(일부개정) 2016.07.18 조례 제8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6.7.18>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신설 2016.7.18.>
5. 그 밖의 수익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신설 2011.10.27>
3.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 2016.7.18.>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7.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제5조의2(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영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7.1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한다.<개정 2011.10.27>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6.7.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3.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관계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2016.7.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22, 2016.7.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2016.7.18>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5.5.1.>

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제13조(위탁사무의 검사) 삭제 <1999.06.26>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14.11.14., 2016.7.18>
2. 기금출납원 :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2016.7.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8.]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8>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70호, 2016.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03.17 규칙 제40호]
개정 [1996.06.04 규칙 제75호]
개정 [1999.11.03 규칙 제176호]
개정 [2000.03.21 규칙 제267호]
(일부개정) 2001.04.26 규칙 제 227호
(일부개정) 2011.10.27 규칙 제 421호
(일부개정) 2015.05.01 규칙 제470호
(일부개정) 2019.10.10 규칙 제5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의 범위에서 낮게 한다. <개정 1996.06.04, 1999.11.03, 2011.10.27>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11.03>

③ 수탁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9.10.10>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조 전문개정 2015.5.1.]

제3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신청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의 대상자 중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우선순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1999.11.03>

제4조(융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 3.삭제 <1999.11.03>
4. 삭제 <2001.04.26>
5. 그 밖의 증빙자료(기술특허증명, 수출실적증명, 유망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개발 및 금천구 입지특성에 적합한 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부업증대에 기여한 업체)
6.~8. 삭제 <1999.11.0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금고 및 융자대상자에 통보한다. <개정 1999.11.0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③ 구청장은 융자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잔여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융자대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03>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연2회(3월, 9월)로 한다. <개정 2000.03.21>
3.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② 그 밖에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고의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신설 1999.11.03>

제6조의2(이자차액 보전)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항 신설 2011.10.27]

제7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 및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변경사항(업체명, 공장소재지, 대표자성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1999.11.03]

제8조(융자업체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22>

부 칙(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설치목적 :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3) 설치년도 : 2019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일정책 추진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 추진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0	50,000	2,200	47,800	47,8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47,800	0	0	47,800

(2) 재원조성 : 구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4) 지원대상 :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경비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 경비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0,000	0	50,000	합 계	50,000	0	50,000
전 입 금	50,000	0	50,000	비융자성사업비	2,200	0	2,2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 치 금 회 수	0	0	0	예 치 금	47,800	0	47,800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0	0	50,000	
720 내부거래	50,000	0	50,000	
721 전입금	50,000	0	50,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0,000	0	50,000	
				1)일반회계 전입금 50,000,000원 = 50,000
수 입 합 계	50,000	0	50,00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역경제과	50,000	0	50,000
산업금융지원	47,800	0	47,800
재무활동(지역경제과)	47,800	0	47,800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47,800	0	47,800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	47,800	0	47,800
602 예치금	47,800	0	47,800
01 예치금 47,800	47,800	0	47,800
1)금고 예치금 47,800,000원 = 47,800			
산업진흥·고도화	2,200	0	2,200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2,200	0	2,200
남북교류협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2,200	0	2,200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2,200	0	2,200
201 일반운영비	2,200	0	2,200
01 사무관리비 2,200	2,200	0	2,200
1)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00,000*11명*2회 = 2,200			
지 출 합 계	50,000	0	50,00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2020년도	50,000	50,000	0	0	0	0	0	0
계	50,000	50,000	0	0	0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0	0	0	0	0	0	0	0
2015년도	0	0	0	0	0	0	0	0
2016년도	0	0	0	0	0	0	0	0
2017년도	0	0	0	0	0	0	0	0
2018년도	0	0	0	0	0	0	0	0
2019년도	0	0	0	0	0	0	0	0
2020년도	2,200	2,200	0	0	0	0	0	47,800
계	2,200	2,200	0	0	0	0	0	47,8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0	0	47,800	47,800	
예치금	소계	0	0	47,800	47,800	
	우리은행	0	0	47,800	47,8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7.19 조례 제10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남북교류업무담당국장, 남북교류업무담당부서장
5. 구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033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2) 설치목적 :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3) 설치년도 : 199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기여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적기에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442,285	22,700	14,420	8,280	450,565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450,565	208,700	0	659,265

(2) 재원조성 :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정기예금 ·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조성

(3) 지원기준 : 환경미화원 1인의 모든 자녀

실제 등록금 납부범위 내 지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대상 :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자녀가 국내의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64,985	426,066	38,919	합 계	464,985	426,066	38,919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20	420	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4,000	42,000	△28,00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0,200	56,225	△36,025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442,285	365,341	76,944	예 치 금	450,565	383,646	66,919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2,500	4,500	△2,0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500	4,500	△2,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500	4,500	△2,000	
216 이자수입	2,500	4,500	△2,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	4,500	△2,000	
				1)금고 예치금 이자 2,500,000원 = 2,5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2,485	421,566	40,919	
710 보전수입등	462,485	421,566	40,919	
713 융자금원금수입	20,200	56,225	△36,025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200	56,225	△36,025	
				1)융자금 상환금 20,200,000원 = 20,200
714 예치금회수	442,285	365,341	76,944	
714-01 예치금회수	442,285	365,341	76,944	
				1)금고 예치금 회수 442,285,000원 = 442,285
수 입 합 계	464,985	426,066	38,919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청소행정과	464,985	426,066	38,919
폐기물	464,985	426,066	38,919
청소관리	14,420	42,420	△28,000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4,420	42,420	△28,0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	14,420	42,420	△28,000
201 일반운영비	420	420	0
01 사무관리비 420	420	420	0
1)운영수당 420			
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2명*3회 = 420			
501 융자금	14,000	42,000	△28,000
01 민간융자금 14,000	14,000	42,000	△28,000
1)학자금 대여 3,500,000원*2명*2회 = 14,000			
재무활동(청소행정과)	450,565	383,646	66,919
보전지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50,565	383,646	66,919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치	450,565	383,646	66,919
602 예치금	450,565	383,646	66,919
01 예치금 450,565	450,565	383,646	66,919
1)금고 예치금 450,565,000원 = 450,565			
지 출 합 계	464,985	426,066	38,919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1,549,324	0	343,592	0	1,138,174	0	67,558	0
2015년도	94,619	0	0	0	90,461	0	4,158	0
2016년도	81,751	0	0	0	76,902	0	4,849	0
2017년도	82,040	0	0	0	76,375	0	5,665	0
2018년도	72,612	0	0	0	65,462	0	7,150	0
2019년도	60,725	0	0	0	56,225	0	4,500	0
2020년도	22,700	0	0	0	20,200	0	2,500	0
계	1,963,771	0	343,592	0	1,523,799	0	96,38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1,381,000	420	1,380,510	70	0	0	0	168,324
2015년도	26,305	0	26,305	0	0	0	0	68,314
2016년도	12,840	0	12,840	0	0	0	0	68,911
2017년도	27,990	0	27,990	0	0	0	0	54,050
2018년도	8,231	0	8,231	0	0	0	0	64,381
2019년도	42,420	420	42,000	0	0	0	0	18,305
2020년도	14,420	420	14,000	0	0	0	0	8,280
계	1,513,206	1,260	1,511,876	70	0	0	0	450,565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423,980	442,285	450,565	8,280	
예치금	소계	423,980	442,285	450,565	8,280	
	우리은행	423,980	442,285	450,565	8,280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79호]
(일부개정) 2000.11.24 조례 제 291호
(일부개정) 2010.01.01 조례 제 601호
(일부개정) 2014.10.20 조례 제 785호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9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8.13>

[본조신설 2014.10.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기금운용 · 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 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2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명이내)
3. 기금 운용 또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4.10.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본조신설 2010.01.01]

제3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0.]

제4조(기금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4., 2014.10.20.>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2014.10.20.>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20.>

② 대여대상 자녀는 환경미화원 1명의 모든 자녀로 한다. <개정 2010.01.01., 2014.10.20.>

③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01.01>,<개정 2014.10.20.>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4.10.20.>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학교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중퇴 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④ 제3항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2014.10.20.>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3.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2014.10.20.>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985호, 2018.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03.17 규칙 제42호]
개정 [2000.05.18 규칙 제198호](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 [2000.11.24 규칙 제208호]
개정 [2003.07.22 규칙 제269호](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32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8 규칙 제 34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1.01 규칙 제 377호
(일부개정) 2010.09.28 규칙 제 39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6.02 규칙 제 4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1.05 규칙 제489호 타법개정
(일부개정) 2018.12.31 규칙 제5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행정문화국장이 한다. <개정 2000.05.18, 2006.12.29, 2010.09.28, 2015.6.2., 2018.12.31.>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1. 기금운용관 – 행정문화국장 <개정 2000.05.18, 2000.11.24, 2006.12.29, 2010.09.28, 2015.6.2., 2018.12.31.>
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00.05.18, 2000.11.24, 2003.07.22, 2007.12.28>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 ~ 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자 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인감증명(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구좌에 입금시

켜야 한다. <개정 2000.11.24, 2010.01.01>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3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1>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 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4>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
3. 지급 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5. 자금대여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0.01.01>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계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구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1.01>

부 칙(제545호, 2018.12.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생 략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재활용품 선별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3) 설치년도 : 1995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폐가전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율 제고, 클린하우스사업 및 재활용정거장 사업 운영비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83,364	27,000	33,000	△6,000	177,36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77,364	0	0	177,364

(2) 재원조성 :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및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재활용 활성화

(4) 지원대상 :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정거장 사업 홍보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등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10,364	317,985	△107,621	합 계	210,364	317,985	△107,621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3,000	138,000	△105,000
보 조 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 입 금	0	0	0	인 력 운 영 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0	0	0	기 본 경 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183,364	290,985	△107,621	예 치 금	177,364	179,985	△2,621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6,000	6,00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21,000	21,000	0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7,000	27,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27,000	27,000	0	
213 수수료수입	21,000	21,000	0	
213-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1,000	21,000	0	
				1)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 21,000,000원 = 21,000
216 이자수입	6,000	6,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	6,000	0	
				1)예치금 이자 6,000,000원 = 6,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3,364	290,985	△107,621	
710 보전수입등	183,364	290,985	△107,621	
714 예치금회수	183,364	290,985	△107,621	
714-01 예치금회수	183,364	290,985	△107,621	
				1)예치금 회수 183,364,000원 = 183,364
수 입 합 계	210,364	317,985	△107,621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청소행정과	210,364	317,985	△107,621
폐기물	210,364	317,985	△107,621
청소관리	33,000	138,000	△105,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3,000	138,000	△105,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영	33,000	138,000	△105,000
201 일반운영비	33,000	53,000	△20,000
01 사무관리비 33,000	33,000	43,000	△10,000
1)폐형광등수거함 구매 400,000원*15대 = 6,000			
1)재활용정거장 거점수거 홍보물 제작 300원*20,000매 = 6,000			
1)클린하우스 홍보물 제작 300원*10,000매 = 3,000			
1)재활용활성화 홍보물 제작 300원*20,000매 = 6,000			
1)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매 1,000,000원*12월 = 12,000			
재무활동(청소행정과)	177,364	179,985	△2,621
보전지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77,364	179,985	△2,62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	177,364	179,985	△2,621
602 예치금	177,364	179,985	△2,621
01 예치금 177,364	177,364	179,985	△2,621
1)금고 예치금 177,364,000원 = 177,364			
지 출 합 계	210,364	317,985	△107,621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1,084,988	0	0	0	0	0	135,242	949,746
2015년도	25,108	0	0	0	0	0	9,968	15,140
2016년도	47,989	0	0	0	0	0	8,100	39,889
2017년도	27,041	0	0	0	0	0	5,893	21,148
2018년도	30,188	0	0	0	0	0	8,352	21,836
2019년도	27,000	0	0	0	0	0	6,000	21,000
2020년도	27,000	0	0	0	0	0	6,000	21,000
계	1,269,314	0	0	0	0	0	179,555	1,089,759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732,785	631,979	0	100,806	0	0	0	352,203
2015년도	25,530	25,530	0	0	0	0	0	△422
2016년도	92,682	92,682	0	0	0	0	0	△44,693
2017년도	37,144	37,144	0	0	0	0	0	△10,103
2018년도	32,809	32,809	0	0	0	0	0	△2,621
2019년도	138,000	138,000	0	0	0	0	0	△111,000
2020년도	33,000	33,000	0	0	0	0	0	△6,000
계	1,091,950	991,144	0	100,806	0	0	0	177,36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294,364	183,364	177,364	△6,000	
예치금	소계	294,364	183,364	177,364	△6,000	
	우리은행	294,364	183,364	177,364	△6,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66호]
전문개정 [1999.07.05 조례 제227호]
개정 [2000.05.18 조례 제275호]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 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07.18 조례 제8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할지역 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6.7.18>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6.7.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8., 2003.7.1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2016.7.18>

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18.>

제5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 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8.]

제6조의2(심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7.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8>

제8조의2(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7.18>

1. 기금운용관 : 재활용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6.12.29, 2011.03.18, 2016.7.18>
2. 기금출납원 : 재활용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7.18>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제872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

1. 운 용 총 칙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 도모

(3) 설치년도 : 2000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821,894	111,969	416,510	△304,541	517,353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20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517,353	25,410	0	542,763

(2) 재원조성 :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3) 지원기준 :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

(4) 지원대상 : 음식점 시설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자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933,863	1,045,731	△111,868	합 계	933,863	1,045,731	△111,868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66,510	128,620	137,890
보 조 금	21,000	11,000	10,000	융자성사업비	150,000	150,000	0
차 입 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8,366	27,589	10,777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 탁 금	0	0	0
예치금회수	821,894	951,225	△129,331	예 치 금	517,353	767,111	△249,758
예 수 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 자 수 입	19,483	19,881	△39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 타 수 입	33,120	36,036	△2,916	기 타 지 출	0	0	0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3,079	56,546	△3,467	
210 경상적세외수입	19,959	20,510	△551	
216 이자수입	19,959	20,510	△551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483	19,881	△398	
				1)공공예금 이자수입 19,483,000 = 19,483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76	629	△153	
				1)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76,050 = 476
220 임시적세외수입	33,120	36,036	△2,916	
224 기타수입	33,120	36,036	△2,916	
224-06 그외수입	33,120	36,036	△2,916	
				1)과징금수입 33,120,000 = 33,120
500 보조금	21,000	11,000	10,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21,000	11,000	10,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21,000	11,000	10,000	
521-01 시·도비보조금등	21,000	11,000	10,000	
				1)생애주기별 미각형성 교육 11,000,000 = 11,000 1)나트륨저감화 환경조성 10,000,000 = 10,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59,784	978,185	△118,401	
710 보전수입등	859,784	978,185	△118,401	
713 융자금원금수입	37,890	26,960	10,93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7,890	26,960	10,930	
				1)융자금 상환 37,890,000 = 37,890
714 예치금회수	821,894	951,225	△129,331	
714-01 예치금회수	821,894	951,225	△129,331	
				1)예치금 회수 821,894,000 = 821,894
수 입 합 계	933,863	1,045,731	△111,868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위생과	933,863	1,045,731	△111,868
보건의료	933,863	1,045,731	△111,868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416,510	278,620	137,890
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	416,510	278,620	137,890
식품진흥기금 운영	416,510	278,620	137,890
201 일반운영비	148,810	60,020	88,790
01 사무관리비 124,300	124,300	36,770	87,530
1)일반수용비 123,250			
2)위생관리 우수업소 지원 100,000원*20개소 = 2,000			
2)소규모업소 위생수준 향상 지원 물품 구매 50,000원*1,500개소 = 75,000			
2)나트륨저감화 홍보물품 구매 2,000원*1,000개 = 2,000			
2)식중독 홍보용품 구매 1,000원*3,000개 = 3,000			
2)손씻기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비 100,000원*5대 = 500			
2)식중독 예방교육 기자재 9,000원*500명 = 4,500			
2)어린이 식중독 예방 찾아가는 손씻기 교육 용역 20,000,000원*1식 = 20,000			
2)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500원*2,000매*2종 = 2,000			
2)어린이기호식품취급업소 지원물품 10,000원*250매 = 2,500			
2)불법수입식품 판매근절 홍보물 구매 2,000원*1,000개 = 2,000			
2)시민먹거리지킴이 운영 홍보물 구매 2,000원*1,000개 = 2,000			
2)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구매비 200,000원*10개 = 2,000			
2)생애주기별 미각형성 교육 5,750			
3)어린이미각형성교육 설문지 인쇄비 500원*5종*500부 = 1,250			
[시 625]			
[구 625]			
3)어린이미각형성교육 교육책자 인쇄비 1,000원*5종*500부 = 2,500			
[시 1,250]			
[구 1,25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3)나트륨저감화 홍보물품 구매 4,000원*500개 =	2,000			
[시	1,000]			
[구	1,000]			
1)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5명*3회 =	1,050			
03 행사운영비	24,510	24,510	23,250	1,260
1)1830손씻기 인형극 상영 850,000원*4회 =	3,400			
1)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강사료 360,000원*2명*2회 =	1,440			
1)소비자감시원 직무교육 행사물품 구매 5,000원*122명*2회 =	1,220			
1)나트륨저감화 교육 강사료 220,000원*10회 =	2,200			
1)생애주기별 미각형성 교육	16,250			
2)주부특공대 조리실습 재료비 100,000원*10회 =	1,000			
[시	500]			
[구	500]			
2)아빠의밥상 조리실습 재료비 150,000원*5회 =	750			
[시	375]			
[구	375]			
2)어르신 건강입맛찾기 조리실습 재료비 100,000원*7회 =	700			
[시	350]			
[구	350]			
2)미각테스트 홍보부스 운영 100,000원*10회 =	1,000			
[시	500]			
[구	500]			
2)어린이미각형성교육 전문강사비 120,000원*5회*20기관 =	12,000			
[시	6,000]			
[구	6,000]			
2)어린이미각형성교육 보조강사비 40,000원*20기관 =	800			
[시	400]			
[구	400]			
206 재료비		1,000	1,000	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01 재료비	1,000	1,000	1,000	0
1)식품수거 유상재료비 10,000원*100건 =	1,000			
301 일반보전금		111,700	62,600	49,100
12 기타보상금	111,700	111,700	62,600	49,100
1)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11,400			
2)집중관리업소 점검 50,000원*20명*4일 =	4,000			
2)집단 식중독 차단 컨설팅 50,000원*5명*20일 =	5,000			
2)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50,000원*37명*20일 =	37,000			
2)손씻기 인형극 지원 50,000원*4명*2일 =	400			
2)위생등급평가업소 사전점검 50,000원*10명*4일 =	2,000			
2)영도측정 모니터링 50,000원*5명*4일*12회 =	12,000			
[시	10,000]			
[구	2,000]			
2)명절(설, 추석) 대비 제조·판매업소 점검 50,000원*8명*4일 =	1,600			
2)식품제조·판매업소 기획점검 50,000원*12명*4일 =	2,400			
2)즉석제조판매가공업소 일제점검 50,000원*10명*5일 =	2,500			
2)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일제점검 50,000원*22명*5일 =	5,500			
2)외국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50,000원*4명*3일*12회 =	7,200			
2)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50,000원*10명*20일 =	10,000			
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참석비 50,000원*122명*2회 =	12,200			
2)찾아가는 원산지 지도점검 50,000원*8명*12월 =	4,800			
2)식품위생감시원 야간 지도점검 50,000원*2명*4회*12월 =	4,800			
1)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100,000원*3건 =	300			
307 민간이전		5,000	5,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5,000	5,000	0
1)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지원 5,000,000원 =	5,000			
501 융자금		150,000	150,000	0
01 민간융자금	150,000	150,000	150,000	0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1)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150,000,000원 = 150,000			
재무활동(위생과)	517,353	767,111	△249,758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517,353	767,111	△249,758
식품진흥기금 예치	517,353	767,111	△249,758
602 예치금	517,353	767,111	△249,758
01 예치금 517,353	517,353	767,111	△249,758
1)금고 예치금 517,353,000원 = 517,353			
지 출 합 계	933,863	1,045,731	△111,868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4년 까지	4,821,471	0	2,284,103	0	1,288,855	0	236,075	1,012,438
2015년도	178,312	0	7,550	0	57,638	0	22,778	90,346
2016년도	210,159	0	80,000	0	52,934	0	30,556	46,669
2017년도	148,756	0	15,000	0	72,183	0	19,057	42,516
2018년도	145,183	0	51,000	0	45,961	0	18,072	30,150
2019년도	134,506	0	51,000	0	27,589	0	19,881	36,036
2020년도	111,969	0	21,000	0	38,366	0	19,483	33,120
계	5,750,356	0	2,509,653	0	1,583,526	0	365,902	1,291,275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연 도 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	기타지출	
2014년 까지	3,919,864	1,757,821	2,053,000	20,193	0	0	88,850	901,607
2015년도	124,491	74,491	50,000	0	0	0	0	53,821
2016년도	138,593	138,593	0	0	0	0	0	71,566
2017년도	183,751	103,751	80,000	0	0	0	0	△34,995
2018년도	131,174	131,057	0	0	0	0	117	14,009
2019년도	318,620	168,620	150,000	0	0	0	0	△184,114
2020년도	416,510	266,510	150,000	0	0	0	0	△304,541
계	5,233,003	2,640,843	2,483,000	20,193	0	0	88,967	517,353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20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8년도말현재액	2019년도말현재액ⓐ	2020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967,540	821,894	517,353	△304,541	
예치금	소계	967,540	821,894	517,353	△304,541	
	우리은행	967,540	821,894	517,353	△304,541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정 [2000.12.26 조례 제301호]
개정 [2004.05.24 조례 제395호]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08.12 조례 제 67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8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행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7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14.>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6.10.14.>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6.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0.1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10.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6.10.14.>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6.10.14.>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6.10.14.>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0.14.>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ㆍ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5.24, 2016.10.14>
2. 기금출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 <개정 2005.5.24, 2011.08.12, 2016.10.14>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4.>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개정 2016.10.14.>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0.14.>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10.14.>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4.>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10.14.>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5.24.>
[전문개정 2016.10.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16.10.14.]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가 된다. <개정 2005.05.24, 2011.08.12, 2016.10.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14.>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 ·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와 해당 구금고 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5.24>

부 칙(제886호, 2016.10.1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정 [2001.04.11 규칙 제226호]
개정 [2001.08.10 규칙 제234호]
개정 [2002.06.07 규칙 제253호]
(일부개정) 2004.06.09 규칙 제 282호
(일부개정) 2007.10.05 규칙 제340호
(일부개정) 2016.01.05 규칙 제489호 타법개정
(일부개정) 2019.10.10 규칙 제5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2장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7.10.0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해촉 등) ① 위촉된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7.10.05>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개정 2007.10.05>
3. 회의의 안건과 심,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05>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5>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지역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전문개정 2007.10.05]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②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인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4.06.09, 2007.10.05>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7.10.05>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10.05>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01.08.10, 2007.10.05, 2019.10.10>

③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10.05>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개정 2007.10.05>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융자당시의 음식가격보다 연 5%이상 음식가격을 인상한 경우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05>

제12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3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해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 <장 제목개정 2004.06.09>

제14조(위해식품 등의 신고 대상) 삭제 <2004.06.09>

제1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신고"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지급한다. <개정 2004.06.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06.09>

제1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06.09>

1.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 그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에게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액이 시,구를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1.08.10, 2004.06.09>
4.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부 칙(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